

의안번호	제 318호
의결 연월일	2012년 월 일 (제 310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2년 4월 30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8
----------	-----

제출연월일 : 2012년 4월 3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0700호, 2011.5.2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2> 개정에 따라 기능10급 계급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한 9계급 체계로 개편. (시행 : 2012. 5. 24)
- 이에 따른 기능10급 폐지를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채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능직공무원 정원채정 기준 조정(별표)
 - 10급 폐지, 9급 비율 상향 조정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재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30%이내	18%이상
조정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48%이상	X
증감	-	-	-	-	18%	△18%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입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입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비 율	7%이내	21%이내	35%이내	35%이내	2%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48%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6%이내	84%이상	26%이내	74%이상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이내	3%이내	6%이내	8%이내	14%이내	31%이내	37%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이내	24%이내	44%이내	15%이내	10%이내	2%이상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①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②~④ (생략)

부칙 <법률 제10700호, 201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제41조, 제63조제2항제4호, 제64조제8호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② (생략)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9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제3항, 별표2, 별표 3 및 부칙제3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